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대 중 문 화 예 술 산 업 발 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2.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23일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 제4항(불공정행위 조사권 신설) 및 제14조 제2항(회계내역 등 제공 의무), 제41조 제4항(과태료)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한 보고 등의 요청 신설(안 제2조의2)
- 나. 회계 내역 등의 제공 주기 및 제공 방법 신설(안 제2조의3)
- 다.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7조)
- 라.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대통령령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보고 등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2. 출석·답변의 경우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제2조의3 (회계내역 등의 제공)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장부 등 회계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면 교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17조 중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1조제1항부터 및 제3항까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바목 위반행위란 바목 중 “회계장부를”을 “회계장부 등 회계내역 및 지급하여야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로 하고, 같은 란의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등 회계내역 및 지급하여야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3호	
1) 1차 위반		150만원
2) 2차 위반		300만원
3)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별표 3 제2호거목(중전의 하목) 위반행위란 거목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	법 제41조	
----------------------------------	--------	--

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	
1) 1차 위반		100만원
2) 2차 위반		200만원
3)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거.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9호	
1) 1차 위반		150만원
2) 2차 위반		300만원
3)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별표 3 제2호너목(중전의 거목) 위반행위란을 너목으로 한다.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6호	
1) 1차 위반		30만원
2) 2차 위반		60만원
3)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 시행 전에 맺은 계약에 대한 회계내역 등 제공의 적용례) 제2조의2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맺은 계약에 대하여 영 시행일을 계약 맺은 날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조의2 (보고 등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간과 방법 2. 출석·답변의 경우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신 설>	제2조의3 (회계내역 등의 제공)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바.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 3호	30만원
1) 1차 위반		60만원
2) 2차 위반		100만원
3) 3차 이상 위반		150만원

<신 설>		
-------	--	--

약을 맺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장부 등 회계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면 교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41조제1항부터 및 제3항까지-- --.

[별표3]

바.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 등 회계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 3호	150만원
1) 1차 위반		300만원
2) 2차 위반		500만원
3)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하.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 제3항	100만원
1) 1차 위반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u>하.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u>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41조 제1항 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u>거.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u>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41조 제1항 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u>거.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u>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41조 제2항 제6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u>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u>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41조 제2항 제6호		30만원 60만원 1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62